6개월의 휴직후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제공 : 근로복지공단〉

판결요지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경비원은 3교대로 나뉘어져 주간 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는데, 주간 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 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까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업무가 고혈압 증세를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755호 파기환송

【당 사 자】 원고, 상고인 이○○
대리인 오○○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구38642호 판결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정○○가 1991. 6. 15. 소외 ○○○고속관광주식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1996. 2.경 순환기계질환 및 고혈압질환자임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 처분을 받고, 휴직기간 동안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1996. 9. 2.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여전히 고혈압이 높고 좌심실이 비대한 것으로 나타나자, 소외 회사는 1996. 9. 14. 위 망인을 퇴직 조치한 사실,

위 망인은 그 다음날 우측 반신부전마비 증세 등으로 인하대학교부속 인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7. 퇴원하였으며, 그 후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97. 3. 16. 혼수상태로 위 병원에 이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에 대한 뇌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97. 3. 21. 10:45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96. 9. 말경 그의 고혈압 등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위 망인의 사망 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

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7. 5. 19.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입사 후 관광버스 차고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위 경비원의 업무는 3교대로 나눠지며 주간 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저녁 근무자는 18:00부터 05:00까지, 야간 근무자는 23:00부터 08:30까지 근무하도록 편성되어 있었고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으며, 경비실은 위 회사 차고지 부근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주간 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 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까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한 사실,

위 망인은 입사 직후인 1991. 6. 17.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40/90mmHg로서 정상이었으나 1993. 5. 20.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160/100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그 후 1994년 건강진단시에는 170/83 mmHg, 1995년 건강진단시에는 180/110 mmHg으로 나타난 사실, 위 망인은 1994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서부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혈압이 점차 상승하였으며, 휴직 중인 1996. 5. 27.부터 8. 27.까지 분당차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는데 그의 병명은 본태성 고혈압과 협심증의증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원심은 위 망인이 입사 직후 받은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정상이었으므로 그의 고혈압은 회사 입사 후 얻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수행한 경비원의 업무는 3교대로 행하여져 신체리듬을 파괴하기 쉬운 것이었던 점, 또한 야간 경비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긴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저녁시간에 혼자서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업무수행 중 얻은 스트레스, 긴장,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을 얻었거나 최소한 고혈압에 걸릴 소질이 높은 상태에서 고혈압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망인의 건강진단 및 치료과정과 사망경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걸린 상태에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 과로, 생체리듬의 파괴 등이 계속되어 점차 고혈압이 악화되는 한편 허혈성심장질환, 뇌경색까지 유발되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휴직처리 될 당시에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특별한 휴양, 안정 및 치료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처리까지 되자 그 충격은 더욱 커 위 질환 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급기야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사

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원심은 위 망인이 입사 직후 받은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점 및 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업무수행 중 얻은 스트레스, 긴장,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을 얻었거나 최소한 고혈압에 걸릴 소질이 높은 상태에서 고혈압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어떤 질환에 의한 고혈압이 아니고 선천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원인 불명의 고혈압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스트레스, 긴장, 과로 등이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더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도 없다.

물론 업무상의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판결, 1996. 9. 10. 선고 96누6806판결 참조), 본태성 고혈압의 여러 발병원인 중 바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본태성 고혈압의 여러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본태성 고혈압의 여러 발병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다른 질병에 이환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다른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망인은 고혈압으로 휴직하여 6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우측반신부전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경비원은 3교대로 나뉘어져 주간 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저녁 근무자는 18:00부터 05:00까지, 야간 근무자는 23:00부터 08:30까지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는데, 주간 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 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까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갖고 고혈압 증세를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원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기다립니다.

- **제안은 사무분야, 기술분야, S/W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은 협회에 재직중인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의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종류	포상인원	연간최대 포상인원	금 액	등 급
최우수센타	1개센타/1년	1개	500,000원	
최우수상	1명/1년	1명	500,000원	
우수상(A)	2명/분기별	8명	150,000원	80점 이상
공로상(B)	5명/분기별	20명	50,000원	60점~79점
장려상(C)	20명/분기별	80명	20,000원	45점~59점
노력상(D)	30명/분기별	120명	10,000원	30점~44점

※ 분기별, 반기별 포상인원은 연간 최대 포상인원 범위 내에서 조절될 수 있다.
※ 최우상은 우수상 대상자 중에서 연 1회 선정하여 확정한다.
※ 최우수센타는 연간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센타로 확정한다. 단, 연간 12건 이상 제출된 센타에 한한다.
※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승급심사시 반영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지침 및 기타신청양식은 제안제도 시행지침(홈페이지 직원광장 직원게시판 게재)을 참고바랍니다.